

의안번호	2207645
의 퇴 인	강경숙 의원
회 답 일	2025.3.17.
추계번호	25C0393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31조제1항 제6호(편의제공등)	(제1항)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함 6.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지속적인 상담지원(신설)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1조제1항 제6호(편의제공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교육활동상 편의에 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지속적인 상담지원”을 명시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행법 제31조제1항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대학의 장이 제공하여야 하는 각종 편의 수단을 열거하고 있으며, 같은 조 제3항은 이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⁾

1)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1조(편의제공 등)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.
1.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
2.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

- 해당 규정을 근거로 현재 교육부는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, 2025년도에는 장애대학(원)생 교육활동 지원에 19억 1,400만원, 보조기기 지원에 6억 5,100만원 등 총 29억 7,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

[표 1] 2025년도 장애학생 교육지원(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지원) 사업 예산 편성 내역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(내역사업명)	예산
장애학생 교육지원	17,132
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지원	2,975
- 장애대학(원)생 교육활동 지원	1,914
- 장애대학(원)생 보조기기 지원	651
- 대학 자율사업 및 인식개선교육 지원	110
- 사업지원 및 관리	300

주: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 중 현행법 제31조에 따라 추진 중인 내역사업(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지원)의 예산 산출 내역만 발췌

자료: 교육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

-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에 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지속적인 상담지원”을 추가하는 경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상담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속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수,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수, 이에 대한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단가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, 현재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할 수 없음
- 개정안은 상담지원의 대상이 되는 학생을 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현 시점에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학생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음

3. 취학편의 지원

4. 정보접근 지원

5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

6.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
- 또한 상담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에 별도의 상담 센터 설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, 현재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수와 학교별 재학 인원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계에 필요한 사업량을 적정하게 가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끝으로 개정안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 단가를 정할 필요가 있으나, 유사한 내용의 사업 등을 통해 준용할 수 있는 단가 정보가 부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nabo.go.kr